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23
----------	-----

제출년월일 : 2005. 7. 4.

제 출 자 : 고성 군 수

1. 개정이유

- 보건복지부 호국보훈정책추진기획단에서 범정부적 추진과제로 확정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의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건강보험진료수가 기준액”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으로 용어 변경
(안 제3조, 제6조)
- 나.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 감면범위 확대 (안 제14조제1항)
 -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유공자와 그 유가족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참전 유공자 및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 다. “방문진료환자중 65세이상자 및 보건의료 취약지 무료순회진료”를 “방문진료환자중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5세 이상자 및 보건의료 취약지 무료순회진료”로 수수료 감면방법 변경(안 제14조제6호)

3.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05. 5. 31. ~ 6. 20. (결과 : 의견없음)

4. 본문 : 덧붙임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의 제명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를 “고성군 보건소 수가조례”로 한다.

제3조(진료수가) 본문중 “국민건강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건강보험진료수가”를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중 “건강보험진료수가 기준액표”를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의료 보험수가”를 “요양급여비용”으로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별지 제2호서식에 구애됨이 없이”를 “별지 제2호서식 또는”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을 “수수료를 감면”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제4호를 삭제하고, 제6호 중 “방문진료환자 중 65세이상자”를 “방문진료환자 중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5세이상자”로 하며, 제8호 내지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은 고성군(국가 및 경상남도 포함) 행정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유공자와 그 유가족 중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다만, 감면대상 수가는 본인부담금 진료비 및 수수료를 말한다.

8.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9.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10.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11.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12. 참전 유공자
13.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제15조 본문중 “시험의 의뢰에 의하지 아니할 수”를 “시험의 의뢰에 응하지 않을 수”로 한다.

제1조중 “지역보건법”을 “「지역보건법」”으로, “제5조중 “국민건강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p>제14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보건의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u>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u></p> <p>②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을 위한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 시험 등을 의뢰할 경우와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에 의한다.</p> <p>1.~3. (생략)</p> <p>4. 타 법령에 의거 수수료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p> <p>5. (생략)</p> <p>6. <u>방문진료환자중 65세이상자 및 보건의료 취약지 무료순회진료</u></p> <p>7. (생략)</p> <p style="padding-left: 40px;"><u>(신설)</u></p> <p style="padding-left: 40px;"><u>(신설)</u></p> <p style="padding-left: 40px;"><u>(신설)</u></p> <p style="padding-left: 40px;"><u>(신설)</u></p> <p style="padding-left: 40px;"><u>(신설)</u></p> <p style="padding-left: 40px;"><u>(신설)</u></p>	<p>제14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 -----<u>수수료를 감면</u>----- -----</p> <p>②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은 <u>고성군(국가 및 경상남도 포함)행정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유공자와 그 유가족 중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다만, 감면대상 수가는 본인부담금 진료비 및 수수료를 말한다.</u></p> <p>1.~3. (현행과 같음)</p> <p>4. (삭제)</p> <p>5. (현행과 같음)</p> <p>6. <u>방문진료환자중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5세이상자</u>-----</p> <p>7. (현행과 같음)</p> <p>8. <u>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u></p> <p>9. <u>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u></p> <p>10. <u>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u></p> <p>11. <u>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u></p> <p>12. <u>참전 유공자</u></p> <p>13. <u>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u></p>
<p>제15조(검사·시험불응) 검사,시험이 불가능한 상태에 대하여는 검사 <u>시험의 의뢰에 의하지 아니 할 수 있다.</u></p>	<p>제15조(검사·시험불응) ----- ----- <u>시험의 의뢰에 응하지 않을 수</u>-----.</p>